

『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』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18(월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3. 12. 4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3. 12. 4(수) 제19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경제체육과장 장동기)

### 가. 제안이유

- 헴프(삼베)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 산업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전시체험실의 용도와 설치시설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전시체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(안 제4조)
-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함 (안 제5조)
- 관리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의무를 규정함 (안 제6조,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(구)수동분교에 사업비 567,876천원을 투자하여 2012.7.20일 준공한 험프 전시체험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2012년 9월 4일부터 2년간 수동영농조합법인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생 략》

### 5. 토론요지

《없 음》

### 6. 심사결과

《원안의결》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《없 음》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의사항 : 없 음
-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【붙임】 평창군 험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

##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(이하 "전시체험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-1번지(방림면 고원로 1247) 일원에 둔다.

제3조(시설운영) ① 전시체험실은 햄프(삼베)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,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 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햄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
2. 햄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
3.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

제4조(관리위탁) ① 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, 제7조, 제10조를 준용한다.

③ 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

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 등) ①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②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기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관리수탁자의 의무)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③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.

④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·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증서의 제출)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위탁계약 즉시 가입하고 군수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·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
2. 제10조에 따른 조사·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